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44
----------	-------

발의연월일 : 2026. 6. 9.

발 의 자 : 백혜련·남인순·박지원
홍기원·백승아·전현희
김문수·김영호·김 윤
이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기금이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기금에서 증권을 매매 또는 대여하는 경우 인구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4항 및 제103조의3 제1항제4호 등).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4항 중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을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 및 투자가 인구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로 한다.

제103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이하 “인구투자전문위원회”라 한다)

제103조의3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구투자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인구구조의 변화가 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

- 나. 제102조제4항에 따른 증권 매매 및 대여가 인구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고려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기금의 인구투자(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인구투자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인구투자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구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고려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10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증권을 매매 또는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안에 제103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 ③ (생 략)</p> <p>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u>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u>를 고려할 수 있다.</p> <p>⑤·⑥ (생 략)</p> <p>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 3. (생 략)</p> <p><u><신 설></u></p>	<p>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u>환경</u> <u>·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u> <u>및 투자가 인구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u>-----.</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 -----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이하 “인구투자전문위원회”라 한다)</u></p>

② 전문위원회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1. ~ 3. (생략)

<신설>

③·④ (생략)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인구투자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인구구조의 변화가 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

나. 제102조제4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가 인구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고려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기금의 인구투자(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인구투자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인구투자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④ (현행과 같음)